

\*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>> 신규 고용시

### □ 고용증대세제

[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]

- 대상·요건: 기업(소비성서비스업 제외)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
- 공제 금액: 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~1,200만원 세액공제

구분	중소기업(3년간)		중견기업(3년간)	대기업(2년간)
	수도권	지방		
청년 등	1,100	1,200	800	400
상시근로자	700	770	450	-

- 사후 관리: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, ①감소인원 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 ②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미적용 (다만, '20년 고용감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적용 제외)

### 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

[중소기업]

- 대상·요건: 중소기업이 2021.12.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
- 공제 금액: ①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순증인원 사회보험료의 100%, ②그 외 상시근로자 순증 인원 사회보험료의 50%(신성장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은 75%) 세액공제
- 사후 관리: 정규직 전환일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, 근로관계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·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은 세액 납부

### 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
[근로자]

- 대상·요건: 청년·60세 이상인 사람·장애인·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체에 2012.1.1.(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.1.1)부터 2021.12.31까지 취업하는 경우
- 감면 금액: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(청년 5년)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%(청년 90%)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(과세 기간별로 150만원 한도)

### □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

[중소기업, 중견기업]

- 대상·요건: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\*과 2022.12.31까지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\* 퇴직 전 만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결혼·임신·출산·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고, 퇴직 후 3~15년 이내 종전 기업 또는 종전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여성으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
- 공제 금액: 고용일부터 2년간 인건비의 30%(중견기업 15%) 세액공제

## >> 고용 유지시

### □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

[중소기업 / 근로자]

- 대상·요건: 중소기업으로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아니하고,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하고,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
- 공제 금액: (기업) 임금감소분의 10% + 임금보전분의 15% 세액공제 (근로자) 임금감소분의 50% 소득공제 (1천만원 한도)

## >> 고용 안정

### □ 육아휴직 복직자 인건비 세액공제 [중소기업, 중견기업]

- 대상·요건: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\*를 2022.12.31.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 
\*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로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
- 공제 금액: 복직일부부터 1년간 인건비의 30%(중견기업 15%) 세액공제  
\*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 배제

### □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[중소기업, 중견기업]

- 대상·요건: 중소·중견기업이 2020.6.30.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 근로자를 2021.12.31.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
- 공제 금액: 정규직 근로자 전환 1인당 1,000만원 세액공제(중견기업 700만원)
- 사후 관리: 정규직 전환일부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, 근로관계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·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은 세액 납부

## >> 기타

### □ 근로장려세제 [가구]

- 대상·요건: 총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(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)  
\* 총소득: 단독가구(2,000만원 미만), 홑벌이가구(3,000만원 미만), 맞벌이가구(3,600만원 미만)  
\* 재산: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(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)
- 최대 지급액: 단독가구 150만원, 홑벌이가구 260만원, 맞벌이가구 300만원

### □ 근로소득증대세제 [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]

- 대상·요건: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고,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이상인 경우
- 공제 금액: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%(중견기업 10%, 대기업 5%) 세액공제
- 대상·요건: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고,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이상인 경우
- 공제 금액: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분의 20%(중견기업 10%, 대기업 5%) 세액공제

### □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감면 [근로자]

- 대상·요건: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1.12.31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(최대주주 등 제외)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
- 감면 금액: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, 소득세의 50%(중견기업 30%)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

### 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[중소기업 / 근로자]

- 대상·요건: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(최대주주·임원, 총급여 7천만원 초과 등 제외)에게 2021.12.31까지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
- 공제·감면금액: (기업) 경영성과급의 10% 세액공제 (근로자) 경영성과급의 50% 소득세 감면  
\*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 배제,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중복 배제